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

나.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구내식당·매점·의무실·체력단련실·콘도 등의 직원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후생복지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³⁾의 규정은

본 조례안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기술상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사료됨.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할 수 있고, 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것에 비해, 자치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법」 제

3) 제77조(능력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2조4)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9조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음.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형식상 위임조례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내용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조례라고 판단됨.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임.

붙임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 4)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라. (생략)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